# 보건행정과 운영내규

제정 2022.10.14.
개정 2022.11.04.
개정 2022.11.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을 준용하여 보건행정과(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학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본 학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학과장,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프로그램 책임자(이하 “프로그램 책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본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학과 및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전담실무 인력(이하 “조교”라 한다)을 둔다.

**제3조(학과장 업무)** ① 학과장은 학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과장은 프로그램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 전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산업체 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산업체 인사는 보건의료 관련 산업체에 재직하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학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임용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매 학기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운영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학과 교육목표, 프로그램 최종성과, 교육과정 설정 및 적절성 검토 <개정 2022. 11. 24.>
   다. 학과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라. 학생지도 및 장학생 선발, 학과 교수, 조교 및 강사의 인사
   마. 학과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
   바. 그 밖에 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과정과 교과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정, 목표달성 평가 및 개선안 작성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나. 수요자 기반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다. 개선된 교육과정 공지
   라. 교수법 개선 및 교육훈련
   마.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바.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안 작성
   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자체평가

아.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분석 및 프로그램의 CQI 작성
자. 전입 희망 학생의 대체교과목 인정 여부 판정
차.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조교)** 조교의 채용과 직무는 본 대학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과의 교육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기반으로 학과에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②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은 정평원이 제시한 인증기준에 맞추어 구성하여 편성한다.

③ 전공교과는 필수이수 교과목과 선택이수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④ 필수이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인증프로그램의 필수이수 교과목으로 편성
2. 인증기준에 따라 40학점 이상으로 편성
3.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주요 학습내용의 80% 이상을 반영
4. 필수이수 교과목의 선-후 이수체계는 정평원의 기준을 준수하여 구성

⑤ 선택이수 교과목은 정평원이 제시한 특성화 학습영역 중 1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⑥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은 별표 1에 표시한다. <신설 2022. 11. 4.>

**제7조(인증프로그램 운영)**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 최종성과는 보건행정과 홈페이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공개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개선을 위하여 강의 종료 후 학습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교과목 개선보고서(CQI)'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편성된 교육과정의 이수체계를 준수함이 원칙이나, 휴・복학, 전과, 편입 등으로 이수체계 준수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후수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선수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면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전입생의 경우 인증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학점인정신청서(대학 양식)를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관리위원회는 인증기준에 따라 동등성을 확인한 후 대학의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 여부를 판정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

⑥ 인증프로그램 졸업요건은 학칙에 따라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로서, 인증프로그램의 필수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인증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자로 한다.

**제8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본 학과 전임교원(강의/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일부 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제외)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인 검토, 기획, 개발 등 <신설 2022. 11. 24.>

**제9조(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교내・외 의견 수렴 및 교육목표 달성 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학습성취도 분석, 강의평가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동계방학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개선한다. 각 교과목별 검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취수준과 평가 결과 분석
2. 수업계획, 운영, 평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계획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교육과정의 개선주기는 대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논의한다.

**제10조(현장실습)**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현장실습의 총괄책임자는 학과장으로 하며, 별도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기타 현장실습운영 관련 사항은 본 대학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생지도 및 상담)** ① 학생지도는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이루어진다.

② 학생상담은 정기, 수시로 구분되며 지도교수는 상시지도를 매학기 학생 1명당 2회 이상 실시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건행정과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4.]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 <신설 2022. 11. 4.>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 교과목명 | 개설학년/학기 | 학점 | 실습 여부 |
|---|---|---|---|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1-2 | 3 | |
|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3-1 | 3 | 실습 |
| 보건의료조직관리 | 2-2 | 2 | |
| 건강정보보호 | 2-1 | 2 | |
|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Ⅰ | 2-1 | 3 | 실습 |
|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Ⅱ | 2-2 | 3 | 실습 |
|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 3-2 | 3 | 실습 |
|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 3-2 | 3 | 실습 |
| 암등록 | 3-2 | 2 | 실습 |
| 의료의질관리 | 2-1 | 2 | |
| 건강보험실무심화 | 2-1 | 2 | 실습 |
| 보건의료통계분석 | 2-2 | 2 | 실습 |
| 보건의료데이터관리 | 3-2 | 2 | 실습 |
| 의료정보기술 | 1-2 | 2 | |
| 의료관계법규 Ⅰ | 1-1 | 2 | |
| 의료관계법규 Ⅱ | 3-2 | 2 | |
| 의학용어 Ⅰ | 1-2 | 2 | |
| 의학용어 Ⅱ | 2-1 | 2 | |
| 의학용어 Ⅲ | 2-2 | 2 | |
| 병리학개론 | 1-1 | 3 | |
| 해부생리학 | 1-1 | 3 | |
| 현장실습 | 3-1 | 2 | |
| - | - | 52 | |

2.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 교과목명 | 개설학년/학기 | 학점 | 실습 여부 |
|---|---|---|---|
|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 1-1 | 2 | 실습 |
| 심사평가심화 Ⅰ | 2-2 | 3 | 실습 |
| 심사평가심화 Ⅱ | 3-1 | 3 | 실습 |
| 원무관리 | 1-1 | 3 | 실습 |
| 병원마케팅관리 | 1-1 | 3 | 실습 |
| 병원경영학 | 1-2 | 2 | |
| 고객경험관리 | 1-2 | 3 | 실습 |
| 공중보건학개론 | 2-1 | 3 | |
| 병원고객관계관리 | 2-1 | 3 | 실습 |
| 의사소통이해 | 2-2 | 3 | 실습 |
| 병원코디네이터(창업) | 3-1 | 3 | 실습 |
| - | - | 31 | |